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제93조의11제6항”을 “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27 및 제65호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27.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30서식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3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3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회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	특정사기·변칙적 집합투자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	투융자집합투자 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개인연금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항	연금저축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9항	소기업·소상공 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장기주택마련 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5항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	세금우대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5항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9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3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청년희망적금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청년도약계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5항	청년미래적금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제10항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제12항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지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계좌번호		⑤ 가입일자	
()년도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⑥ 납입일자	⑦ 납입금액	비 고	⑥ 납입일자
⑧ 연 간 납 입 금 액		사 용 목 적	
합 계 액		소득공제 신청용	
⑨ 소득공제대상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⑥, ⑦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 일자 및 금액을 적습니다.
- ⑧란은 납입금액을 더하여 그 금액을 적습니다.
- ⑨란은 ⑧연간 납입금액 합계액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제9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연도 ~		

첨단전략 산업기금 출연현황	출연일	출연금액	비 고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2조의4(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영 제93조의14제11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 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 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 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 제 2. ~ 59의2. (생 략)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 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 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 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 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제61조(서식 등) ①----- ----- -----. 2.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 ----- ----- -----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u>제93조의11제6항</u>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 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 61의26. (생략) <u><신설></u> 62. ~ 65의36. (생략) <u><신설></u> 66. ~ 97. (생략) ② (생략)	----- ----- ----- ----- ----- <u>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4제10항</u> ----- ----- -- 59의4. ~ 61의26. (현행과 같음) 61의27.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30서식 62. ~ 65의36. (현행과 같음)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 66. ~ 9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